

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,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“전입금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“기금전출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함(안 제4조제1호)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호 중 “기금전출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 <b>출연금</b>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b>기금전출금</b>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b>전입금</b></p> <p>2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·국 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<b>사무중</b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<b>회계관계 공무원</b>을 <b>기금관리 공무원</b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「지방재정법」 <b>의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</b>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b>사무 중</b> ----- ----- ----- ----- <b>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</b> ----- ----- <b>회계관계공무원</b> ----- ----- <b>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</b> ----- -----.</p> <p>④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<b>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</b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의 “출연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의 단서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”를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”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 <b>출연금</b>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·국·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b>사무중</b> 지출의 원인 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<b>회계관계 공무원</b>을 <b>기금관리 공무원</b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<b>경리관</b>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b>전입금</b>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b>사무 중</b>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 ----- <b>회계관계공무원</b>을 <b>기금관리공무원</b>으로 ----- -----.</p> <p>④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<b>재무관</b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